

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변경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		30일
신청인	기관·단체 또는 법인명(설립연도) (년 월 일)	대표자명
	주소 또는 소재지(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)	
변경 사항	변경 전	변경 후
명칭		
대표자		
소재지		

「식품위생법」 제70조의8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5제4항에 따라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

첨부서류	1. 주관기관 지정서 2.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

